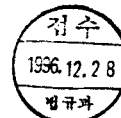


사전감사대상

문서번호	자자 5011 - 631	감 사 장			
처리기한	1996. .	보존기간	이 사 부총재 총 재 원 영 배 12/30		
기 안	1996. 12. 30.	영구			
발 신	1996. . .				
과 장 부 장					
기 안 자	김 낙 교	합	(법규과) 기획부장 66	전 결 근 거	직무권한분류표 제1장 제1절 제1항 제4호
소 속	자금부 자금과	의			
직 위	행 원 전화 4503				
수 신					
참 조					
제 목	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및 동 「절차」 개정				

「대외무역법」 개정으로 수출입승인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97. 1.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<붙임1>과 같이 검토하여 <붙임2, 3>과 같이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및 동 「절차」 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붙임 1. 「대외무역법」 개정에 따른 무역금융 관련규정 개정 검토 1부
 2.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개정(안) 1부
 3.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」 개정(안) 1부. 끝.



사본수신처 :

한국은행 행내 021-10('89.11.19) ()

(결재서식)

207

업무	필요	공
연혁	필요	람
기록		

9

(붙임 1)

「대외무역법」 개정에 따른 무역금융 관련규정 개정 검토

1. 검토배경

- 「대외무역법」 개정으로 97. 1. 1일부터 수출입승인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됨
다만, 예외적으로 다음 품목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입승인을 계속 받도록 규정
 -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입공고,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에서 정하는 품목
- 현행 무역금융관련 규정*에는 지급인도조건(D/P) 및 대금교환도 조건(COD 및 CAD)방식에 의한 원자재수입의 경우 무역금융 용자 한도, 내국신용장 개설한도 및 미선적잔액 산정시 외국환은행의 수입승인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승인 폐지에 따른 별도기준 마련 필요
- * 「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」 제12조 제6항, 제29 조 제7항 및 동 「절차」 제22조 제2호

2. 검토의견

- 지급인도조건(D/P) 및 대금교환도조건(COD 및 CAD)방식에 의한 원자재수입의 경우 수입승인이 폐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이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무역금융 용자한도 등을 산정토록 관련규정 및 별지서식 개정

「한국은행 신용장 개설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21조
「한국은행 신용장 개설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21조(안)

현행	안	비고
제1조 ~ 제11조 (생략)	제1조 ~ 제11조 (현행과 같음)	
제12조(용자한도) ① ~ ⑤ (생략)	제12조(용자한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
⑥ 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의 용자한도에는 당해 원자재의 일람불 수입신용장개설분(지급인도조건 및 대금교환도조건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<u>수입승인분</u>)과 내국신용장 개설분을 포함한다.	⑥ 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의 용자한도에는 당해 원자재의 일람불 수입신용장개설분(지급인도조건 및 대금교환도조건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<u>수입승인분,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수입금액</u>)과 내국신용장 개설분을 포함한다.	수입승인 폐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관리
⑦ ~ ⑧ (생략)	⑦ ~ ⑧ (현행과 같음)	
제13조 ~ 제28조 (생략)	제13조 ~ 제28조 (현행과 같음)	
제29조(개설한도) ① ~ ⑥ (생략)	제29조(개설한도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	
⑦ 제1항,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 개선훈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원자재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액(지급인도조건 및 대금교환도조건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는 <u>수입승인 또는 허가분</u>)을 차감하여야 한다.	⑦ 제1항,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 개선훈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원자재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액(지급인도조건 및 대금교환도조건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는 <u>수입승인분,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수입금액</u>)을 차감하여야 한다.	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	
제30조 ~ 제37조 (생략)	제30조 ~ 제37조 (현행과 같음)	
(신설)	부칙	
	이 세칙은 1997. 1. 1부터 시행한다	시행일 명시

「한국은행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수입금액을 위한 절차, 개정(안)」

제1조 ~ 제21조 (생 략)	제1조 ~ 제21조 (현행과 같음)	
제22조(미선적잔액의 산정방법) 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의 용자 한도 산정액의 기준이 되는 미선적잔액은 자금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	제22조(미선적잔액의 산정방법) 신용장기준금융 수혜업체의 용자 한도 산정액의 기준이 되는 미선적잔액은 자금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2. 원자재금융 : [(용자금잔액 ÷ 「달러」당 용자금액) + 수입신 용장 개설(D/P조건, 대금교환조건수입의 경우 <u>수입승인분</u> 포함)잔액 + 원자재내국신용장 개설잔액] ÷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원자재의존율	2. 원자재금융 : [(용자금잔액 ÷ 「달러」당 용자금액) + 수입신 용장 개설(D/P조건, 대금교환조건수입의 경우 <u>수입승인분</u> , <u>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수입금액</u> 포함)잔액 + 원자재내국신용장 개설잔액] ÷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원자재 의존율	수입승인 면제분에 대해서는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미선적잔액 산정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
제23조 ~ 제58조 (생 략) (신 설)	제23조 ~ 제58조 (현행과 같음) 부 칙	
	이 절차는 1997. 1. 1부터 시행한다.	시행일 명시

一 수업승인 때
제품목에 대
해서는 수업
계약서 또는
물품에도록
약서상의 수
업금액을 기
준으로 한도
관리

< 별과 45-3호 서식 >

실적기준원자재금융 한도관리 '카드'

업체명: _____

대표자: _____

주 소: _____ (전화: _____)

(단위: US\$, 백만원)

연 월 일	용자대상수출실적 ¹⁾		평균원자재 외존율(%) (C)	용자한도 (D) (A×1/3)×C 또는 (B×1.5)×C 중 큰 금액	L/C 개설 및 V/L 발급상황						용자취급상황			한도 여유 (D-I-L)
					L/C 또는 V/L No	L/C개설 및 V/L발급액 (E)		취소 또는 감액 (F)	자기자금 결재액(G)		금융 전환 (H)	지 보 잔 액 [I=E-(F+G+H)]	용자 회수 (J)	
	수 입	구 매				수 입	구 매							
	과거1년간 자사제품 수출실적 (A)	과거3개월간 자사제품수 출실적 (B)												

주: 1) 「수출실적관리카드」에 의한 용자대상수출실적과 일치하여야 함

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란에는 9개월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을 기재할 수도 있음

(선 설)

실적기준원자재금융 한도관리 '카드'

업체명: _____

대표자: _____

주 소: _____ (전화: _____)

(단위: US\$, 백만원)

연 월 일	용자대상수출실적 ¹⁾		평균원자재 외존율(%) (C)	용자한도 (D) (A×1/3)×C 또는 (B×1.5)×C 중 큰 금액	L/C 또는 V/L No	L/C 개설 및 V/L 발급상황						용자취급상황				한 도 여 유 (D- L)
						L/C개설 및 V/L발급액 ²⁾ (E)		취소 또는 잔액 (F)	자기자금 결재액(G)		금융 전환 (H)	지 보 잔 액 [I=E-(F+G+H)]	용자 회수 (J)	잔 액 (K)	잔 액 (L=J-K)	
	수 입	구 매				수 입	구 매									
	과거1년간 자사제품 수출실적 (A)	과거3개월간 자사제품수 출실적 (B)														

주: 1) 「수출실적관리카드」에 의한 용자대상수출실적과 일치하여야 함

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란에는 9개월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출실적을 기재할 수도 있음

2) V/L발급액,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수입금액

수입승인
폐지품목에
대해서는
수입계약서
또는 물품
매도확약서
상의 수입
금액을 기
준으로 한
도관리

